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. 2. 양순경의원 외 2인
나. 회부일자 : 2008. 1. 3.
다. 상정일자 : 2008. 1. 7.(제1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
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
소득수준 및 의원의 의정활동실적과 물가인상을 등을 참고하고 주민의
의견을 수렴하여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월정수당 월 2,400천원에서
월 2,150천원으로 하향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근거로 의정활동비의
지급기준액을 제천시 재정능력 및 의원의 의정활동실적과 주민의 소득
수준 및 물가인상을 등을 참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
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 하고자함.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7조)

○ 제7조(월정수당 지급기준)

- 월정수당 월 2,400천원을 월 2,150천원으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

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촉여부는 없으며, 2007년 12월 24일 일부개정한 조례가 2008년 1월 4일 공포되었으므로 일부개정조례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,

- 본 조례의 일부개정 목적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(월정수당의 지급)의 월정수당은 월 2백 4십만원을 월 2백 1십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
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로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월 2백 4십만원 범위안에서 월 2백 1십 5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다고 판답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